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제시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조회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부처의 입장은 **수용(일부수용 포함) 32개, 논의 필요 34개, 불수용 27개**임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제1부 자유권 (생명권·신체의 자유) 나현채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위	I. 사형제도 개선 ○ 제1, 2차 NAP 보다 구체화 및 발전된 계획 필요 ○ 사형제 폐지 여론과 해외 입법례 정밀 검토 필요 ○ 개별 법정형에 있어 사형의 축소, 절대적종신형 도입 등 법·제도 개선 검토 필요		법무부
	II. 교정시설 의료제공 개선 과제 추가 필요 ○ 의료인력 충원	<논의 필요> ○ 정부 예산 및 공무원 인력 증원과 관련되어 법무부 독자 추진 어려움 ○ 의료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	법무부
	○ 전문 진료과목 개설	<논의 필요> ○ 교정기관 의료과는 1차 의료기관(의원)으로 등록 개설 운영되고 있음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 분야 진료과목 개설 필요함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시 전문 분야 진료과목 개설 재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 보험급여정지제도 재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의한 예탁금 제도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급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 지불하고 있음 - 수용자 보험급여는 입소 전·후 동일함 (실익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진료예산 증액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green;"><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증가와 고령화로 인하여 외부진료인원이 증가함 ○ 인권 및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관계부처와 예산증액을 위해 계속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협의 하겠음	
	<p>Ⅲ. 외국인 장기보호 방지대책</p> <p>○ 기간 상한이 없고, 보호개시 및 연장 결정에 (준)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며, 청문절차가 부재하는 등의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 개선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p>○ 보호기간의 상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기간의 상한이 설정될 경우 상한기간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보호가 해제될 것을 기대하여 남용적 난민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하는 등 출국을 고의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p>○ (준)사법기관의 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보호는 신속한 출국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법절차로 가는 것은 부적절함. 설령 별도의 판단 기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행정 심판 기능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무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문절차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등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령에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어 권익구제가 가능함 - 또한, 특별 행정심판 기능을 마련할 경우 행정절차나 적법성 보장에 기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난민심사보다 실질적 난민심사가 중요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수용〉 : 기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심사기간 단축과 함께 실질적인 심사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길어질수록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높아질 수 있음 - 신속한 난민심사를 통해 심사대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의 인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보호소 내 장기보호도 예방할 수 있음</p> <p>※ 일반적인 경우 난민인정여부 결정(1차 심사 및 이의신청)까지 평균 1년 4개월 소요</p> <p>- 난민심사결정 시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기준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박해사유에 관한 진술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p>	
	<p>IV. 인신보호법 관련 문제</p> <p>○ 인신보호구제청구의 대상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사람 포함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p>○ 인신보호법은 <u>제정 시부터</u> 형사절차에 의해 체포·구금된 자 및 수형자, <u>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는 인신보호 구제청구 대상에서 제외</u>하였음(제2조 제1항 단서)</p> <p>○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는 보호의 원인이 되는 <u>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u>함으로써 그 원인 관계를 다룰 수 있고, <u>보호명령 자체의</u></p>	법무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u>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도 할 수 있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은 <u>보호기간의 제한</u>(제52조, 제63조 제2항), 보호 대상자의 <u>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u>(제54조, 제63조 제6항),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u>이의신청</u>(제55조 제1항, 제63조 제6항) 등 <u>사후적 구제절차를 마련</u>하고 있음 ○ 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한 <u>사법심사 기회가 마련</u>되어 있고, 아울러 이의신청 등 <u>사후적 보호수단도 마련</u>되어 있으므로 <u>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구제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u>됨 <p>※ <u>헌법재판소도</u>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를 인신보호구제청구</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대상에서 제외한 위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 하였음(2012헌마686)	
	○ 강제퇴거명령을 (준)사법기관이 발령하도록 개선		
	○ ① (준)사법기관에 의해, ② 구금 자체의 당부를, ③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개별 법률에 부재하는 경우, 인신보호구제의 대상이 됨을 명시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보호법은 인신보호구제청구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조 단서) ○ 위 규정의 구제절차를 (준)사법기관에 의한 절차만으로 한정하는 경우, 심리지연에 따른 신속한 판단의 어려움 등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구제 절차를 반드시 사법심사에 한정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공청회 제시 의견처럼 위 구제절차를 사법심사에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	내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것 보다는 사법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u>의견 수렴 후 심도있는 재논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u></p>	
	<p>V.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보호’ 가 갖는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중 조사기간을 1~2주의 단기로 한정하고, (준)사법기관이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며, 보호기간 상한도 60~90일로 축소 필요 ○ 탈북민센터 운영을 통일부가 주관하고, 범죄 혐의자 등만 국정원에 이첩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보호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법령심사중이며, 18.2월 중 시행예정 * 입법예고 (17.10.17-11.27) ○ 업무소관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바, 보호결정 이전 ‘임시보호 및 조사’ 는 국정원이, 보호결정 이후 ‘정착지원’ 은 통일부가 수행함이 적절함. 	통일부
<p>제1부 자유권 (정보인권) 오길영 교수, 경실련</p>	<p>II.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구체적 이행방안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 : 기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중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p>행안부, 방통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전화 본인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시스템)도 가입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필요 하므로 궁극적 대안 아님. 오히려 본인 인증책임을 국가가 사기업에 위험하게 위임하는 문제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핀 및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도 주관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이므로 소관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재지정 하거나 추가 지정 필요 ○ 시민사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재논의 	법무부
	<p>- 주민등록수집 법정주의에도 불구하고, 수집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너무 많음</p>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위배되는 예외규정이 있으면 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개선 요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인권침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발찌는 보완처분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 처벌 효과있음. 크기 축소를 비롯해 친인권적이면서도 부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추적 전자장치 성능 및 크기 개선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감독 대상자의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전자발찌 소형화 및 착용감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우리나라 전자발찌 크기는 외국의 장치와 비교했을 때 기능대비 가장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작은 수준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휴대장치를 항상 소지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일체형 전자발찌’ 를 ’ 18년 하반기부터 보급하여 피부착자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법 상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처벌, 연좌제 문제, 이를 위헌으로 본 현재 다수의 의견을 고려할 때 폐지나 본질적 개선 고려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과는 그 목적 등이 달라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경우 행위자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으로,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성폭법 상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경우,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마 	법무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964 결정 등 다수의 결정에서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에서 제시된 헌법재판소 2002헌가14 결정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아닌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결정임 -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관하여도, 헌법재판소는 2016. 5. 26. 선고 2014헌바164 등 결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이중 처벌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헌의견 7, 위헌의견 2로 합헌결정을 내림 ○ 신상정보 등록면제 제도의 경우,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법(2017. 6. 21. 시행)에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 기술혁신에 따른 보편적 사생활 침해 관련 법적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에는 ‘법제 정비’의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규제 범위 및 규제 대상 기기가 불분명 - 추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상정보의 형태까지 고려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예방 등을 위한 보호 기준 강화 등 	<p>행안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법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 과제의 상세한 이행계획 보완 필요 - 기존의 입법을 단순히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의 창의적 접근이 필요함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이슈 점검을 토대로 구체적인 문제 발생 시 업계, 정보주체 의견 등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 등의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생체정보 등과 관련한 기술은 초기 단계로서 서비스 내용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구체화 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에 구체적 내용 보완 필요 - 생체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로 규정하여 보호 강화 필요 -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상 바이오정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고, 보호원칙 및 기술적 조치 사항을 제시 <p>※ 다만,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규율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관하는 행안부와 함께 논의 필요</p>	방통위 행안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이슈 점검을 토대로 구체적 문제 발생 시 업계, 정보주체 의견 등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 등의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생체정보 등과 관련한 기술은 초기 단계로서 서비스 내용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구체화 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 	
	<p>Ⅲ. 표현의 자유(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민간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식별화 등 민간부문 데이터 가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 : 소관부처에 대한 이견</p>	<p style="text-align: center;">행안부 과기정통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웹, 앱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I같이 창의성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에서 국가가 획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정책과제는 국가가 웹·앱의 창의성 배제하고 UI 등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이 웹·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p style="text-align: center;">과기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정보통신서비스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조치에 관한 내용임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 강력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	<수용>	방통위
	○ 기타 - 디지털 증거, 통신데이터의 남용과 디지털 도감청의 오용, 개인정보 유출의 등 중요 이슈 포함 필요	○ 기반영	방통위,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부 장애·이주 (장애) 노경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I. 생명권 ○ 장애인 자살 - 장애인 자살 통계 구축 및 관련 자료 연구	<논의 필요> ○ 장애인 자살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라는 의견인지, 관련 자료 연구라는데 어떤 관련 자료인지 의견의도가 불분명 ○ 제시 의견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질의 의도를 알기 어려움	복지부
	-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살 예방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을 정기적으로 방문 혹은 연락하는 서비스를 실시	<논의 필요> ○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예방캠페인, 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 자살예방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자살예방센터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지식과 장애인 자살 사례 대처 방법 교육 · 장애인 활동보조인, 재활병원 의료진, 복지관 심리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 실시 ·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공 · 장애인 동료를 통한 동료상담을 강화 	<p>기획 및 자살통계 관리 등을 업무를 하고 있어 상담사 등 상담인력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여 개의 개별 기관에 대한 자살 예방 교육 제공할 수 있는 강사 등의 인력 확보가 원활하다는 전제 충족 시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 과목 중 ‘자살 예방 교육’ 추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활동 및 사회생활을 통한 자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통해 사회적응 지원 ·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대체 사회 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확대 · 중증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은 발달 장애인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업무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개선을 통한 자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 특성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장애인 본인 소득 정도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결정 · 활동지원제도에 있어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 보장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 ○ 현재 준비 중인 장애등급제 개편 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 수급자격 및 급여량 결정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학업의 기회, 취업 교육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법 낙태의 범위 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장애 태아의 낙태를 정당화 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함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제시의견만 봐서는 삭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기어려움 	복지부
	<p>II.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및 질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자 및 지원체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대신할 판정체계 수립. 서비스 지원 금액 현실화 -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및 치료사 인력양성 체계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질의 항목에 대한 제시 의견의 구체화 필요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가족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가족에 대한 장애인식 교육 실시 및 부모동료상담을 연계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활동지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 교육·사업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음 	복지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원 시간 및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중심의 휴식지원을 전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문화·여가 바우처 제공 - 찾아가는 장애인부모동료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동료상담사 양성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지원 확대 - 장애인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장애인가족지원) (본조신설 2017.2.8.) 근거로 전체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추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1) 제31조에 근거 하여 추진 중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1) 제31조 근거 발달(지적·자폐성) 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심리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중임 ○ 개별 장애인단체의 프로그램인 부모동료 상담사 양성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연한 폐지 - 사용 중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재신청 허용 - 중앙정부 차원의 유지관리비 지원 - 자신의 몸에 맞게 튜닝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보조기기지원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확대는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논의 필요 	복지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Ⅲ. 여성장애인</p> <p>○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및 여성장애인 정책 전담 추진체계 등 구축</p>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p>○ 제시 의견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질의 의도를 알기 어려움</p> <p>○ 여성장애인 지원법의 어떤 부분 제정인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전담 추진체계구축인지 알기 어려움</p>	복지부									
	<p>○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마련</p>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p>○ 현재, 여성장애인의 고용시 고용장려금을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지원하는 등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장애인 고용장려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1294 981 1818 1321"> <thead> <tr> <th data-bbox="1294 981 1355 1118">구 분</th> <th data-bbox="1355 981 1415 1118">경증남성</th> <th data-bbox="1415 981 1476 1118">경증여성</th> <th data-bbox="1476 981 1677 1118">중증남성</th> <th data-bbox="1677 981 1818 1118">중증여성</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294 1118 1355 1321">고용장려금액</td> <td data-bbox="1355 1118 1415 1321">30만원</td> <td data-bbox="1415 1118 1476 1321">40만원</td> <td data-bbox="1476 1118 1677 1321">40만원</td> <td data-bbox="1677 1118 1818 1321">6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고용장려금액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고용장려금액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직장내 성차별 예방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보급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강화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지원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산전 교육 지원 - 다양한 상담지원체계가 구축 필요 - 여성장애인 친화적 시설과 의료진의 장애감수성, 여성장애인의 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여성장애인 전문 지정 산부인과’가 필요 - 여성장애인의 심리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전문인력(수화통역사 등)의 배치 필요 - 산후조리원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는 홈 헬퍼 서비스, 육아도우미 전국 확대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green;">〈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 의견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질의 의도를 알기 어려움 ○ 여성장애인 관련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충분한 논의필요 	복지부
	<p>IV.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조사 개선 및 65세 이상 장애인 선택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green;">〈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준비 중인 장애등급제 개편 시 장애유형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인정 	복지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 개발 및 수급자격 갱신제도 개선 - 65세 이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선택권 보장 	<p>조사표 개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개선 필요성 및 정도에 대한 합의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대상, 제도의 목적 등을 달리하여, 제도 간 취사선택을 하게 할 수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등 권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 등급제한 폐지 및 최종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 - 급여 이용범위와 바우처 생성주기를 확대하고, 단가 차등화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 장애유형을 고려한 활동보조급여의 다양화 - 활동보조서비스 품질 보장 및 최저임금액 보장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 및 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준비 중인 장애등급제 개편 시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활동지원 신청 가능 ○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원부담 주체, 대상자격 등 논의 필요 ○ 바우처 생성주기 확대는 전체 바우처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사항 ○ 최종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 최종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연계를 용이하게 함 ○ 현재 준비 중인 장애등급제 개편 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 이용 가능 	복지부

분야	내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기관의 활동보조서비스 질 향상 등의 평가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며, 활동지원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또는 컨설팅 실시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 매년 예산편성 시 최저임금액 인상분 이상의 인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17년 단가대비(9,240원) 대비 '18년 정부(안) 활동지원단가는 10,760원으로 16.5% 인상하는 등 예산확보 추진 중 	
	<p>V 장애인 교육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적정 수준의 특수학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특수교사의 1,000명 이상을 충원하고 특수 교육 대상 범주의 확대 및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개선 ·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담당교사 중 연 500명 이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 및 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확대 및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를 국정과제(51-2)로 추진 중에 있음 - 최근 5년간 연평균 600여명씩 증원하였으나 ‘18년에는 1,173명을 증원하였으며, -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수교사의 	교육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화</p>	<p>연차적 증원을 통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추진 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법령으로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특수교육 대상 범주의 확대는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수교육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 ○ 시·도교육청별로 특수학교(급) 특수교사가 매년 특수교육 관련 역량강화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p>*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에 반영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학급 설치 및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 환경의 토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담당교원과 보조인력 배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 일반학교 내 통합학급 설치 의무화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 및 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배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특수교육 순회교사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을 지원하고 있음 - ‘특수교사 확대 및 통합교육 지원교사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하거나 재배치하여 2인 교사 시스템을 도입. 통합학급 내 교사들을 위한 통합교육 연수를 의무화하고 유급 보조 인력을 확보, 장애학생들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통합교육의 환경을 마련 	<p>(순회교사) 배치를 국정과제(51-2)로 추진 중에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 '14년부터 사도교육청 평가(5-3-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 반영하여 각급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에도 반영하여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하여 지속 노력할 계획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반학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의 전환 및 2인 교사 시스템 도입은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수교육 학계 및 관련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특수교육 운영 계획」을 통해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16년 이수율 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양성대학 모든 학생들이 교직소양 과정의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2. ○ 다만,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의무화에 관한 것은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자 의견수렴 및 논의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실화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에 장애학생지원센터 기능 및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전반에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대하여 평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부터는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등 실태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실화에 지속 노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박사 과정의 장애인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생활지원 대책 마련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학생의 법적의무화 -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100% 확보 - 장애인 교수·학습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확보 - 장애학생 도우미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조공학기기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16.10~'17.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31조에서 대학의 장에게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의무화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인편의시설을 	교육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설치할 의무가 있음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보조기기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도우미 인력을 확대해 왔음 ※ 도우미 수(명) : ('16) 2,600 → ('15) 2,750 → ('16) 2,850 → ('17) 3,000 - 장애대학생 도우미 연수를 통하여 장애학생 지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석·박사 이상의 장애인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지원 및 정책		고용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VI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p> <p>○ 장애인 자립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자립정착금 제도화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장애인에게 임대주택 할당제 도입 · 자립생활 주택 확대 -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시설 내 탈시설 지원 전담인력 배치 ·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운영 · 탈시설 지원 지자체 조례 제정 권고 ·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초기비용 지원 ·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지원주거(주거장소+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p>○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근거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시행('17.10 ~ 11) -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 17.11 ~ ' 18.10) 	복지부
	<p>VII.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p> <p>○ 시설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 마련이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p>○ 기존제도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평가시(매3년) 인권예방실(예방교육 등 조치) 상황 점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수시 실태점검 	복지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 전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귀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 장애인 당사자 코치 배치 · 사회복귀 지원 수가 신설 - 사회복귀 초기 지원 및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모니터링 센터 운영 · 직장복귀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직업재활 강화 · 주거환경 개선지원(주거개조, 독립주택 지원) · 장애인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지속적인 연계 필요 · 지역사회 보건복지 통합모델 및 전달체계 구축 	<p>및 조치</p>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질의 항목에 대한 제시 의견의 구체화 필요 	<p>복지부</p>
	<p>VIII.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시 장애인 위기상황 대처 방안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연구 · 유관기관 협조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 : 소관부처에 대한 이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재난정책은 행안부 소관임 	<p>복지부 행안부</p>

분야	내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육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취약계층 유형 별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 및 커리큘럼 교재 개발 · 안전한 대피를 위해 유형별 재난 대비 및 대피 교육, 훈련 - 장애인 등 재난취약자 행동매뉴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 전문체험관 건립 및 교육 · 매뉴얼 개발 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관련 전문가 당사자 의견 수렴 - 재난 취약계층 대치 기구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재난 알림을 할 수 있는 기기나 소프트웨어 제작 · 재난 시 대피를 보조할 수 있는 장비 마련 · 장애 유형별 대피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 안전체험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체험관 설립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특화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 설립 <p>IX. 장애인 건강권 보장</p> <p>○ 건강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지자체 조례제정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의 무목록 작성 및 모니터링 ·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한 건강침해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세부방안 수립 및 시행,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제고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설비 및 위생시설설비 및 장비 개발·보급 · 중증장애인 500명당 장애인건강주치의 1명 비율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의료장비, 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정보접근방안 시행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p>○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논의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8년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예정 - 세부시행방안은 시범사업등을 거쳐 확정 - 추진 시 장애인단체 등 의견수렴 실시 예정 	복지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을 고려한 국가건강검진제도 실시 · 장애인건강법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장애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시행 ·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전문인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실시 ·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관 체육편의시설 완비 · 장애인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정보 시스템 제공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장애인 및 만성신부전환자 본인부담율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율 10%에서 5% 경감 필요 · 사회적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 - 척수장애 등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간호병동제 확대 적용 · 장기입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 · 자조집단 및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질의 항목에 대한 제시 의견의 구체화 필요 	복지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X.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연계 장애인소득 지원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근로장려세제 체계 별도 마련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장애인 근로소득 수준 등을 고려, 장애인 근로장려세제 지원기준 마련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키움통장의 3년 만기 탈수급 조건 완화 · 매칭율(1:1) 조정 등 장애인의 근로 및 여건에 적합한 제도 개선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의료 및 보조기기 지원급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의료급여 자격기준 완화 및 필요 보조기기 지원 확대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질의 항목에 대한 제시 의견의 구체화 필요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적정 근로소득 보장을 위한 보충급여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적정 근로소득 보장을 위한 보충급여 지원 도입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 부작용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장애인의 적정 근로소득 보장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노동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장려금' 지급 규모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증장애인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중증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30만원 공제 후 · 나머지 근로 및 사업소득에 50%~100% 공제율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green;">〈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의 근로소득 현황 및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에 따른 실제 근로유인 효과 분석 필요 ○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소요 재정 추계, 기재부 협의 및 '19년도 이후 예산반영 절차 필요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예방·치료·진단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질병·부상 등에 대한 예방·치료·진단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안마 서비스는 요양급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용 불가 	복지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특례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령연금 조기 수령 제도 도입 · 중증장애인 수급 개시 연령 하향 조정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며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장애인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수급개시연령을 하향하는 특례를 두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평균수명 자료 및 소득 자료 등 특례를 두어야 할 자료에 근거하여 논의되어야 함 ○ 또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이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은 장애인 소득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에서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특례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성 장애 등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 정도 이상의 가입기간을 달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특례를 적용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로서 해당 장애의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상해보험적 성격에 따라 역선택 방지를 위해 장애의 초진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 수급권 여부가 판단 됨 ○ 또한 장애연금 제도는 의학적 평가를 기반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악화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p>	<p>으로 하나, 의학적 평가만으로는 근로능력 상실의 원인이 장애의 악화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움(가입 단계 및 장애 악화 전후의 진료기록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적으로, 선천적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가입자는 10년이상 가입 후 장애 연금의 형태로 연금수급을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어 선천적 장애의 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백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동 사안도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제도와 함께 논의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p>XI. 장애인 노동권 보장</p>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p style="text-align: center;">노동부</p>

분야	내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서비스 기능 강화 · 직업재활 기관,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관련 단체 등의 취업 후 적응지원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후 적응지원 서비스 강화(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은 공단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한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1개월 이내 적응지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계속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사업주의 인식개선 교육의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9. 국회 통과)에 따라 현재 공단에서 의무고용미이행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사업체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관련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양성 및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불수용> : 소관 재지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양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양성 및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생활센터 사업으로 시행 중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인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의 지속적 근로지원을 위한 인력(근로지원인, 직무보조인 등) 필수 배치 및 확대 · 근로지원인 확대 및 처우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수용></p> <p>○ 근로지원인 등 지원 확대(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지원인력을 1천명에서 1천2백만원으로 확대 - 근로지원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단가 인상('17년 9,690원→11,32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자격증 소지 근로지원인에 대한 차등 처우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수용></p> <p>○ 전문자격증 소지 근로지원인에 차등 처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가능한 근로지원인에 대해 '18년 지급기준을 일반 근로지원인 6,520원보다 많은 7,580원 지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해고 보호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해고 보호 제도 등을 벤치마킹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예방을 위해 해고 심의 절차 및 기준 마련 · 지원체계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화 		
	<p>○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지원</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장애인 고용 시 추가 지원을 할 필요 		
	<p>XII. 장애인 문화권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창작발표 전용 공간 및 창작지원 - 장애인 전용 공연장, 창작센터 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의 전국 거점화 및 지역 장애문화예술센터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지자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 논의를 거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높은 지역에 대표 지역문화기반시설(생활문화센터 등)에 장애인 예술활동 공간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지역문화기반시설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도자율편성 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장애 예술 공간 조성 등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체부가 시설확충을 권고할 수 있으나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창작발표를 위해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의 장애인 전용극장으로 활용 	<p><불수용></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접근성·편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예술 전용 공연장(극장)을 2021년까지 별도 마련할 계획임.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의 장애인 대관 방안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용 대관 혹은 장애인 대관시 비용 감면 등의 혜택 제공시 기존 대관 예술단체에 대한 역차별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전문화 및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양성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양성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과정구축 · 장애인 문화예술가 양성을 위한 전문적 교원의 확보와 양성과정 마련 ·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학교 내 프로 장애인 문화예술가 배치 및 후학 양성 활동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장애인문화예술센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 양성기관을 신규 설립하기보다는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기능을 보완 확대해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예술대학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X III.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지원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 마련 및 심리정서의 료서비스 제공 · 지자체별 장애인학대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 ·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 장애인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예방정책 : 학대 발생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감소 전략 제시 · 학대피해자 위한 원스탑 서비스 지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주민 대상 교육 실시 : 학대 이해 식별, 민감성 키우기 · 장애인 자기옹호 촉진 및 자기결정, 주도성 강화 목적의 교육, 훈련 		법무부
제2부 장애·이주 (이주) 오경석,	<p>I. 3차 NAP 에 대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실제적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형식적, 제도적 접근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필요 		법무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경기도외국인인권 센터 소장																	
	<p style="text-align: center;"><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문제 영역</th> <th style="width: 30%;">내용</th> <th style="width: 50%;">개선 방안</th> </tr> </thead> <tbody> <tr> <td>이용자의 접근성</td> <td>인터넷 접근의 불편함, 한국인 의존성, 개인정보 등 인권 침해</td> <td>- 이용자 자신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해 수강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td> </tr> <tr> <td>운영상의 문제</td> <td>이용자 모집을 위해, 운영기관이 운영비 지원 없이 스스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상담, 언어 등) 그에 대한 정당한 지원 필요</td> <td>- 상담, 언어 지원 등 부가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td> </tr> <tr> <td>취약한 인권친화성</td> <td>- 교재: 교재의 '국민만들기(사통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 - 강사: 취약한 이주인권 감수성 재교육을 통한 질 관리 필요성관리+처우 개선 - 운영: 교실의 비민주성(매시간 출결 서명날인 장시간 수업 등) - 의사결정: 운영기관 및 수강생 등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 통로 전무</td> <td>- 사회통합의 재개념화(외국인과 국민사이의 상호적 과정에 근거, 교재 수정) - 강사진을 대상으로 이주인권 및 다문화 감수성 보수교육 정례화 - 교실에서의 당사자의 자율성 제고 - 법무부, 운영기관, 강사, 참여자 사이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제도화</td> </tr> <tr> <td>모니터링을 포함한 환류체제 부재</td> <td>프로그램 운영 효과와 만족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그를 정책에 환류시킬 수 있는 시스템 미비</td> <td>- 정례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td> </tr> </tbody> </table>	문제 영역	내용	개선 방안	이용자의 접근성	인터넷 접근의 불편함, 한국인 의존성, 개인정보 등 인권 침해	- 이용자 자신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해 수강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운영상의 문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운영기관이 운영비 지원 없이 스스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상담, 언어 등) 그에 대한 정당한 지원 필요	- 상담, 언어 지원 등 부가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취약한 인권친화성	- 교재: 교재의 '국민만들기(사통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 - 강사: 취약한 이주인권 감수성 재교육을 통한 질 관리 필요성관리+처우 개선 - 운영: 교실의 비민주성(매시간 출결 서명날인 장시간 수업 등) - 의사결정: 운영기관 및 수강생 등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 통로 전무	- 사회통합의 재개념화(외국인과 국민사이의 상호적 과정에 근거, 교재 수정) - 강사진을 대상으로 이주인권 및 다문화 감수성 보수교육 정례화 - 교실에서의 당사자의 자율성 제고 - 법무부, 운영기관, 강사, 참여자 사이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제도화	모니터링을 포함한 환류체제 부재	프로그램 운영 효과와 만족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그를 정책에 환류시킬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정례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p>1. 이용자의 접근성 <수용 : 기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9개국 언어 지원) - 컴퓨터 사용법이 서투른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한국인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p>2. 운영상의 문제 <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교육 뿐 아니라 상담, 정보제공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인력은 상담, 정보제공도 본연의 업무 중 하나로 해야 하는 것임. - 상담을 했다고 별도 지원은 어려움 <p>3. 취약한 인권친화성 <일부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부분 - 국민과의 쌍방향 사회통합 및 강사진 인권
문제 영역	내용	개선 방안															
이용자의 접근성	인터넷 접근의 불편함, 한국인 의존성, 개인정보 등 인권 침해	- 이용자 자신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해 수강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운영상의 문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운영기관이 운영비 지원 없이 스스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상담, 언어 등) 그에 대한 정당한 지원 필요	- 상담, 언어 지원 등 부가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취약한 인권친화성	- 교재: 교재의 '국민만들기(사통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 - 강사: 취약한 이주인권 감수성 재교육을 통한 질 관리 필요성관리+처우 개선 - 운영: 교실의 비민주성(매시간 출결 서명날인 장시간 수업 등) - 의사결정: 운영기관 및 수강생 등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 통로 전무	- 사회통합의 재개념화(외국인과 국민사이의 상호적 과정에 근거, 교재 수정) - 강사진을 대상으로 이주인권 및 다문화 감수성 보수교육 정례화 - 교실에서의 당사자의 자율성 제고 - 법무부, 운영기관, 강사, 참여자 사이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제도화															
모니터링을 포함한 환류체제 부재	프로그램 운영 효과와 만족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그를 정책에 환류시킬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정례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교육, 관계자간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 향후 추진 예정</p> <p>○ 불수용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출결 확인은 학사관리 상 필수적인 부분임(대참, 허위출결 방지) 	
	<p>○ 인권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 못한 비포괄적 접근</p>	<p>4. 모니터링을 포함한 환류체제 부재 <수용 : 기시행></p> <p>○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기관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중</p> <hr/> <p>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가족 동반 불허 정책의 재고 <불수용></p> <p>○ 정주화방지 원칙에 따라 고용허가제법 제18조제1항은 외국인취업활동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한시) 취업인 점과 가족동반 이민에 따른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임 <p>※ 고용허가제 편람 p.259</p> <hr/> <p>2.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재검토 : 방문</p>	<p>법무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 style="text-align: center;">〈표 2〉 지난 5년간 이주 인권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 과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환경의 변화</th> <th style="width: 40%;">내용</th> <th style="width: 40%;">정책 과제</th> </tr> </thead> <tbody> <tr> <td>체류의 장기화 및 정주형 장기체류자의 증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3개월 이상 장기체류외국인의 비율은전체의 74.7%인1,530,539명 -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재외동포 18.2%, 결혼이민 5.9%, 영주 6.4%로 정주형 장기체류자가 30%를 상회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자원에서 정착 지원으로 - 생활 세계 인권 의제들의 부상 </td> </tr> <tr> <td>가족 체류의 증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동반 금지의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제도 안팎에서 가족 체류는 빠른 속도로 증가 -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장기체류외국인 가운데 가족가구 57%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자의 14.5%는 배우자, 4.2%는 자녀 국내 거주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 정책 포용 - 가족 동반 불허 정책의 재고 - 외국인근로자 가족 자녀의 기본권 </td> </tr> <tr> <td>취업비자 이외의 취업이주민의 증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취업자의 비중은 약 50%에 불과 - 영주(F-5) 비자 소지자의 고용률 73.5%, 재외동포(F-4) 59.2%, 결혼이민자 49.8%, 유학생 12.7%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재검토 : 방문 취업제 수준의 노동허가제도(가족 동반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td> </tr> <tr> <td>미등록 체류의 미감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율은 감소했으나 규모는 그대로 : 2005년 27.3%에서 2016년 10.1%로 감소, 그러나 규모는 208,971명 - 전체 미등록자 가운데 단기체류외국인이 63.5%로 장기체류외국인 36.5%를 압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체류자 중심의 미등록 단속 및 퇴거 정책 재고 </td> </tr> </tbody> </table>	환경의 변화	내용	정책 과제	체류의 장기화 및 정주형 장기체류자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3개월 이상 장기체류외국인의 비율은전체의 74.7%인1,530,539명 -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재외동포 18.2%, 결혼이민 5.9%, 영주 6.4%로 정주형 장기체류자가 30%를 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자원에서 정착 지원으로 - 생활 세계 인권 의제들의 부상 	가족 체류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동반 금지의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제도 안팎에서 가족 체류는 빠른 속도로 증가 -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장기체류외국인 가운데 가족가구 57%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자의 14.5%는 배우자, 4.2%는 자녀 국내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 정책 포용 - 가족 동반 불허 정책의 재고 - 외국인근로자 가족 자녀의 기본권 	취업비자 이외의 취업이주민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취업자의 비중은 약 50%에 불과 - 영주(F-5) 비자 소지자의 고용률 73.5%, 재외동포(F-4) 59.2%, 결혼이민자 49.8%, 유학생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재검토 : 방문 취업제 수준의 노동허가제도(가족 동반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미등록 체류의 미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율은 감소했으나 규모는 그대로 : 2005년 27.3%에서 2016년 10.1%로 감소, 그러나 규모는 208,971명 - 전체 미등록자 가운데 단기체류외국인이 63.5%로 장기체류외국인 36.5%를 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체류자 중심의 미등록 단속 및 퇴거 정책 재고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취업제 수준의 노동허가제로(가족 동반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취업제에 있어 사업장변경, 가족동거에 대해 일반 고용허가제 보다는 완화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동포포용 정책의 일환임 - 국내 노동시장이나 외국인 체류질서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고용허가제와 방문 취업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접근하기는 곤란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3. 장기체류자 중심의 미등록 단속 및 퇴거 정책 재고 <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7. 10월말 현재 불법체류자가 24.4만명에 달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국민 일자리 잠식 등의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장기불법체류자는 그간의 출국 기간 부여, 입국규제유예 등 시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던 법준수 의지가 없는 자들로서,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유화정책을 시행하기는 곤란 -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 유도정책 	
환경의 변화	내용	정책 과제																
체류의 장기화 및 정주형 장기체류자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3개월 이상 장기체류외국인의 비율은전체의 74.7%인1,530,539명 -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재외동포 18.2%, 결혼이민 5.9%, 영주 6.4%로 정주형 장기체류자가 30%를 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자원에서 정착 지원으로 - 생활 세계 인권 의제들의 부상 																
가족 체류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동반 금지의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제도 안팎에서 가족 체류는 빠른 속도로 증가 -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장기체류외국인 가운데 가족가구 57%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자의 14.5%는 배우자, 4.2%는 자녀 국내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 정책 포용 - 가족 동반 불허 정책의 재고 - 외국인근로자 가족 자녀의 기본권 																
취업비자 이외의 취업이주민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취업자의 비중은 약 50%에 불과 - 영주(F-5) 비자 소지자의 고용률 73.5%, 재외동포(F-4) 59.2%, 결혼이민자 49.8%, 유학생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재검토 : 방문 취업제 수준의 노동허가제도(가족 동반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미등록 체류의 미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율은 감소했으나 규모는 그대로 : 2005년 27.3%에서 2016년 10.1%로 감소, 그러나 규모는 208,971명 - 전체 미등록자 가운데 단기체류외국인이 63.5%로 장기체류외국인 36.5%를 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체류자 중심의 미등록 단속 및 퇴거 정책 재고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적극 시행 예정	
	○ 국제 인권 기구들의 권고 내용에 대한 개방적이며 전향적인 포용의 필요성 - 차별금지법이나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공공부문 내 인종차별금지 관련 내규의 마련	<논의 필요> ○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하여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입법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및 국민의견수렴을 계속 진행할 예정	법무부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접근성 개선		법무부
	II. 추가적인 과제 ○ 인권 사각 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 미등록 체류자, 무국적자 및 무국적 아동, 외국인 근로자 가족, 난민신청자, 국적 미취득 비혼 상태 의 싱글맘 이주여성, 장기구급자, 범죄피해자 등 인권정책 사각지대 해소	<수용> ○ 인권 사각 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 인권침해·차별·역차별 조사 및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권익 옹부즈만 도입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강화를 통해 재한외국인의 고충 및 인권침해 사례 등 구제 실질화	법무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주민’ 분야 종사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함양 및 처우 개선 - 외국인·이주민’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정기 실시 인권친화적 태도를 업무평가에 반영 -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 : 소관부처 변경 요청</p>	<p style="text-align: center;">법무부</p>
<p>제3부 사회권 (교육권) 오동석 교수, 아주대 로스쿨</p>	<p>I. 아동·학생 교육권 보장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인권법, 차별금지법, 인권교육법 제정 ○ 차별금지, 교육과정 중의 사건의 학생기록부 기재 개선, 정치적 권리 보장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벌금지 교내 학생 생활지도는 학교 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하고 있음 ○ 현재, 회복적이고 교육적인 생활지도를 권장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내 생활지도 방식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이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복지부 교육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p>○ 초·중등교육법 학생기록부 관련 조항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선도 및 피해 학생의 보호라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 (헌법재판소 결정)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사건번호: 2012헌마630, '16.4.28) - 현재도 1,2,3,7호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있으며, 4,5,6,8호는 졸업시 심의를 통해 삭제하고 있음 - 또한 문제 행동 이후에 학생의 행동이나 태도에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록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예방하고 있음 	
	<p>II 교육권 보장의 생태계 개선 필요</p> <p>○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교육 정책 수립의 참여 보장,</p>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p>○ 교원의 정치 참여는 교육 및 공무원의</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성에 따른 교육의 국가주의 배제 방안, 민주시민교육 체계, 학교민주주의 체계 및 학교민주주의 체계 구축, 사립학교 비리와 부정부패 방지책 마련, 지방교육자치의 보장</p>	<p>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되어야 함</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관련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교육의 정치 중립성(헌법 제31조), 교육의 중립성(교육기본법 제6조),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죄(국가공무원법 제84조) </div>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팀을 설치·운영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교과서 제도를 검토하겠음 ○ 민주시민교육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학습할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및 범부처 협업을 통해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지원(계속)</p> <p>※ 2015 개정 교육과정 10대 범교과학습 주제에 민주시민교육 포함</p> <p>- 정책연구, 시도교육청·학교 현장 교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추진방안 마련(' 18년)</p>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p>○ 학교민주주의 체계 구축 : 학교구성원과의 논의 선행 필요</p> <p>- 바람직한 학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간 숙의를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한 합의점 모색이 선행되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p>○ 사립학교 비리와 부정부패 방지책 마련: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확대하고, 비리 사학은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p>	

분야	내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도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사립학교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률 개정(「사립학교법」 등)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p>○ 지방교육자치의 보장</p> <p>초·중등 권한 이양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는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인권 → 교육권 → 학교 민주주의 → 교육청 권한 강화는 지나치게 논의구조를 확장하고 있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p>제3부 사회권 (노동권) 신인수 변호사, 민노총 법률원</p>	<p>I.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는 계획은 거짓·공상임 ○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 등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사유제한을 도입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 노동자 사용 	<p>노동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차별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시정 신청 주체 확대* 필요 * 노동조합 등에 차별시정 신청권한 부여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시정제도를 전면개편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 - 다만, 노동조합 등에 부여되는 권한이 차별시정 신청권인지 또는 대리권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차별시정 지도·감독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관 수의 확충, 업무량 경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될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 추진 시 비정규직 차별여부 점검, 파견·사내하도급 근로감독 강화를 추진 중 - 또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할 계획* 중 * '17~'18년, 근로감독관 1,000명 증원 계획 	
	<p>II.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관련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를 특수고용노동자로 쓸 것 ○ 그간의 입법 경과를 봤을 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행정권 발동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고는 그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형태가 다양하여 법적 보호범위 등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함 - 행정적으로 가능한 사안은 진행하되, * 최근 전국택배연대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17. 11.) 	복지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고의 지속적·안정적 노동조건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적 보호 필요 ○ 정부는 '06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이후, 특고의 노동조건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 -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9개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중이며, 현재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중 * 현재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법 개정(적용제외 사유 명확화) 검토·추진 중 -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을 통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함께, 9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확산 	
	<p>Ⅲ.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지원 관련 의견</p> <p>○ 취업지원에 더불어, 실습생 보호대책이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p>○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17.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지원체제 강화(학교현장 지원 기반 강화, 실습 종료 후 취업지 	교육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원 체계 마련 등)</p> <p>- 학생보호 중심의 현장실습 강화(노동인권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학생 보호를 위한 현장실습 관리 강화)</p> <p>※ 사회관계장관회의(8.25)에서 동 방안 확정</p>	
	<p>IV.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의견</p> <p>○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 강제 추방제도 재검토, 법무부 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재검토</p>	<p>[노동부] - <불수용></p> <p>○ 고용허가제는 상시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 중소기업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고 있음.</p> <p>○ 그러나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으로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질 경우 구인이 어려운 농축산업, 어업 분야나 지방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는 반면 충분히 내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은</p>	<p>노동부 법무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저임금을 이유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커져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p> <p>○ 이에 현재 시점에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생각됨</p> <p style="text-align: center;">[법무부]</p> <p>1. 외국인 강제추방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관련 원점부터 재검토 <불수용></p> <p>○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을 추방시키지 못할 경우, 노동시장 왜곡, 잠재적인 범죄 및 공공서비스 부담증가,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법질서 경시 풍조가 만연해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외국인 체류질서 및 사회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는 등 강제퇴거제도 재검토요청은 수용 곤란함</p> <p>- 다만, 집행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특별 행정심판 기능을 마련할 경우 행정절차나 적법성 보장에 기여 가능 <p>2. 법무부 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재검토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단기취업(C-4)의 규정을 법적근거로 실시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로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좀더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음 ○ 농어업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휴일, 휴게시간 규정 적용 제외대상이나,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한 달에 2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법무부·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과 지자체의 지속적 사후 관리로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숙식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결혼 이민자의 가족에 대해 계절근로자로 초청을 허용하고 있음</p>	
	<p>V. 기타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적 용어의 사용 (근로가 아닌 ‘노동’ 등) ○ 최소한 결사의 자유 ILO협약 비준, 노동자 단결권 확대·보장, 노사 자율교섭권 보장, 단체행동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담겨야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 98호) 비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과 국내법·제도 간 분석을 통해 법·제도를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비준할 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노동부</p>
<p>제3부 사회권 (사회복지권)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 센터 센터장</p>	<p>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제도의 개·폐지를 포함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17. 8월) 	<p style="text-align: center;">복지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8.10월), 대상자별로는 소득재산 하위 70%의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p> <p>○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추가적인 개선방안 마련</p> <p>- 사각지대 감소 등 제도개선 효과 분석, 전문가·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 20년)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p>	
	<p>○ 주거권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면에서 독자적인 항목으로 편성하고 내용적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접근권 측면을 반영해야</p>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p>○ 국토부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해 의료 서비스 등을 결합한 공공실버주택, 청년 계층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 등을 결합한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p> <p>○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결합하는</p>	<p>국토부 복지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방안에 대해서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가 필요함	
	○ 사회보험·자활과 관련하여,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안들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며, 근로 유인을 위한 자활사업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 제시 의견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질의 의도를 알기 어려움 ○ 제시의견이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화 되어야 함	복지부
	II. 건강·보건 및 환경권에 대한 의견 ○ 건강권과 관련하여,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함시킬 것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 제시 의견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질의 의도를 알기 어려움 ○ 제시의견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화 되어야 함	복지부
	○ 탈핵 부분도 반영할 것		산업부, 원자력위원회
	○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관심과 과제 편성이 필요		법무부
	III. 기타 제안 ○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	<p style="text-align: center;"><논의 필요></p> ○ 제시 의견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복지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끼지 않을 정도의 공공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누락되어 있어 보이므로 보완이 필요해 보임 	<p>질의 의도를 알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의견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화 되어야 함 	
<p>제4부 기업, 여성, 아동 (기업인권)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p>	<p>I. 기업과 인권 분야에 대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책임’ 이라는 용어 대신 ‘기업과 인권 또는 인권경영에 대한 책임(책무)’ 로 사용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이행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NCP 개선 방안은 구체성이 필요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국제기구 인권보호는 국내 시민단체와 인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 : 기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연구용역, 인권위 협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기 반영 하였으므로 별도 조치 불요 ○ 개선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것을 독립적인 위원회(정부+민간전문가) 로 NCP구성 -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직접 이해 당사자 참여는 곤란 	<p>산업부, 외교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권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		
	○ 국가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인권교육 등 기업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		
	○ 기업의 이행원칙 이행에 대한 지원 계획이 필요		
	○ 노사정위원회, KOTRA, KOICA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한국기업의 해외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p>○ KOTRA는 무역투자 정보기관으로 현지 인권침해 관련 법령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p> <p>- 진출국의 인권침해 등 법령정보 제공은 법무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p> <p>*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에서 해외진출기업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p>	
	○ 인권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의 제도화 필요		
○ 국내 기업과 인권 이행을 위한 기업, 정부, 노조, 투자자, 소비자, 시민사회, 언론 등으로 구성된 다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자간 포럼 구축 고려		
	<p>○ 국제적 추세와 시급성 등에 따라 독자적 기업인권 NAP 수립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p>○ ‘독자적’ 기업과 인권 NAP 수립 보다는 현행 NAP에 관련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상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NAP와 정책의 성격이 동일하고, 수립절차와 과제가 중복됨 - UN 등 국제사회의 합의(UN인권이사회 결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권고, G20선언문 등)도 국가차원의 기업인권 정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을 뿐, NAP의 독자적 운영을 권고한 바 없음 - 현재 14개 국가가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중이나 그 중 전체 인권 NAP를 운영 중인 국가는 6개국에 그치는 등 인권NAP를 수립·시행 중인 국가에서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무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인권 관련된 국내외 규범·제도에 대한 이해 ○ 유엔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NAP 평가 방법을 연구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제4부 기업, 여성, 아동 (여성)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p>	<p style="text-align: center;">I.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와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불수용〉</p> <p>1. 성매매여성 비범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6.3.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합헌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는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필요 * 성매매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 기본적 생활보장, 인권침해의 문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성판매의 비범죄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p>여가부 법무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우리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임</p> <p>2.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p> <p>○ 19대 국회에서 법무부, 고용부, 복지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모두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기본법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실익이 적고, - 특정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 법률 제정은 과잉입법 우려 및 법률 상호간 적용상 혼란 초래 <p>○ 다만, 우리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인신매매피해자를 포함한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주거, 의료·법률 및 교육·자활 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2017년부터 경찰 등 성매매방지 업무담당자 교육 과정에 「인신매매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수사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나가겠음</p> <p>*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표 마련 및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경찰청, 지자체에 활용할 것을 권고(' 16.8.2)</p>	
	<p>II.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여성폭력예방</p> <p>○ 대중매체·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규제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중매체와 온라인에서의 성차별, 여성비하, 혐오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계속) ○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이드라인) 既 제작 및 배포(' 17.4월) * 방송을 기획·제작·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꼭 한번 점검해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 ○ 온라인 사업체 및 관련 협회의 자율 규제 항목에 성차별성, 성평등 개념이 	<p>여가부 법무부 방통위</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포함되도록 관련 연구 수행 후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Ⅲ. 성희롱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업주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 사업주의 법적 책임 강화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근로감독 강화,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금액 상향 -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노동부
	Ⅳ. 여성 노동 ○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 성별 임금격차 개선 -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시 남녀간 임금정보 포함(성평등 임금공시제) - AA 부진 사업장에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 제출 의무 부과	노동부
	Ⅴ. 모·부성권 강화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 및 남성 육아 휴직 활성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 만료 노동자의 남은 법정 휴가기간 동안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150→200만원으로 인상('18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성권 보장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양립문화 확산 정착을 위한 협의회 운영 외에 가족친화기업 인증 항목에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 중 	
	<p>VI. 여성대표성 확대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선출직과 비례대표 비율 2:1,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 국회 비례대표 후보자 50% 여성할당과 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 : 소관부처 변경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임 - 다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여성가족부도 동 사안에 대하여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선거위 여가부</p>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확대 및 지방의회 할당제 확대 ○ 헌법 개정 시 동수제 조항 삽입 및 동수내각 실현 	<p>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민간단체를 통한 공청회 등을 지원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공기업과 공공기관 고위 공직자) 30% 여성할당제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직 목표제 의 ' 22년까지 확대 목표가 수립되었음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2022년)」(* 17.11.21. 공표예정) - 다만, 모든 분야에 30% 강제할당은 승진후보군의 규모에 따라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이 최근 수립된 바, 동 계획의 이행 추이를 보고 목표를 우선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대 여성 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목표제를 적극적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대 여성 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목표제를 도입하였고 ‘22년까지 확대목표도 수립하였음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2022년)」(’ 17.11.21. 공표예정)	
	VII.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차별해소 ○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인권보장, 지원강화 필요	<수용> ○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교육(‘18년 상반기) ○ 한부모가족(미혼모 내용 포함)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발간·배포(‘18년 하반기)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비양육 부모도 자녀양육 책임을 공평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홍보·캠페인 전개(‘18년 하반기)	여가부
제4부 기업, 여성, 아동 (아동) 이경은 연구교수, 고려대 인권센터	I. 생명권 관련 ○ 아동의 생애적 특성을 고려해 생명권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		복지부
	II. 신체의 자유 관련 ○ 아동의 의료·복지 시설에 있어서 ‘아동 최선이익의 법칙’ 이 준수되도록 해야 함	<논의 필요> ○ 제시 의견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질의 의도를 알기 어려움	복지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 제시의견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화 되어야 함	
	Ⅲ.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 ○ 민법상의 거소지정권과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복지 시설에의 보호조치가 헌법·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타당한지 검토 필요		복지부
	Ⅳ. 근로의 권리 관련 ○ 연령, 환경, 임금수준 에 대한 규범 확립과 담장 부처 확인·부처 간 네트워킹이 필요		노동부
	Ⅴ.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관련 ○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의 고찰이 이루어져야 함		법무부
	Ⅵ. 아동의 특수성 관련 ○ 아동기는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정책에서 고려하고, 특히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이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 출생등록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적취득 속지 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법제와는 부합하지 않음 - 대한민국 국적과 상관없는 ‘출생등록제도’ 를 도	법무부

분 야	내 용	소관 부처 입장	소관부처
		<p>입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저촉이 발생</p> <p>-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나 그 자녀에 대한 관리는 외국인등록제도를 통해 해결</p>	
	<p>VII. 기타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은 다른 인권분야에 비해 시민사회의 활동도 부족하고 권리 보호도 낮은 수준이므로 최소한의 국제인권기준이라도 잘 답아야 함 ○ 국제 기준과 국내의 제도적 현실 사이의 차이 (GAP) 도출·현황 파악이 필요 		복지부